

1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요

1. 예술활동증명의 정의와 개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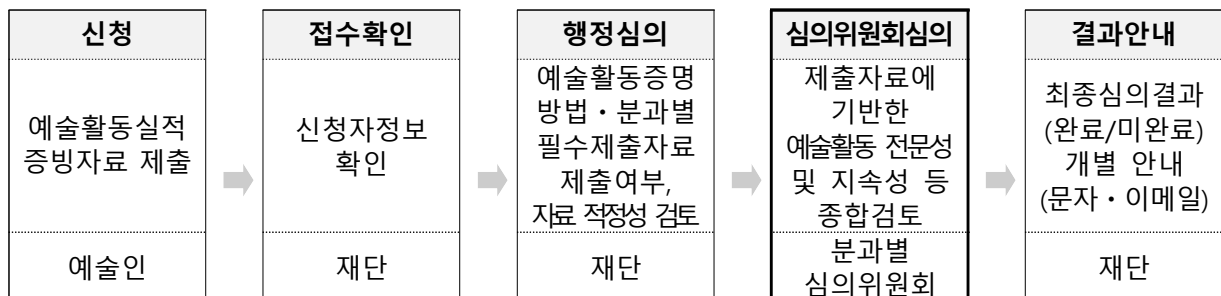
- ☐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의 법적 보호를 위해 「예술인 복지법」에 의거, 예술을 ‘업(業)’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
 - * ‘업(業)으로 활동’은 ‘단일 직업활동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‘전문적인 활동(전업(專業))’을 의미
- ☐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인증·등록·승인제도가 아니라 예술인 복지 사업의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

2. 문화예술분야의 구분

- 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, 실연(實演)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(예술인 복지법 제2조)
- ☐ 문화예술 분과를 총 15개로 구분 (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8조)

문학	미술(일반)	미술(디자인·공예)	미술(전통미술)	사진
건축	음악(일반)	음악(대중음악)	국악	무용
연극	영화	연예(방송)	연예(공연)	만화

3. 예술활동증명 신청-심의 절차



4. 예술활동증명 방법·종류

- ☐ 예술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신청·접수
- ☐ 예술인 본인의 활동 내용에 맞게 직접 15개 ‘문화예술분야’ 중 1개 선택 (2개 이상 분야가 혼합된 활동의 경우 3개까지 ‘복수’ 선택 가능)
- ☐ 아래 각 호 중 1개의 ‘예술활동증명 방법’ 선택

구 분		정의 및 내용
① 예술 활동 증명 (일반)	공개 발표된 예술활동	「저작권법」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 방식에 따른 행위 - 저작물의 공연,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의 발행
	예술활동 수입	-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당, 원고료, 인세, 저작권료, 저작인접권료, 예술품 판매대금 등 - 예술인 본인에게 귀속된 액수에 한하여 인정
	기준 외 활동	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 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예술활동을 인정받는 방식
	• 원로 예술인	-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 의 사람
	• 경력단절 예술인	- 전문적 예술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질병, 육아, 임신, 출산, 가족돌봄,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활동이 중단된 사람
	•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	-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다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특수한 활동 방식
	무형문화재 관련 특례	- 무형문화재 보유자, 전승교육사 - 무형문화재 이수자
② 신진 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	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	-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 대상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 가능
③ 예술 활동 증명 특례	특 례	특수한 목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(한시적 유효)
	• 산업재해보상보험	-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
	• 사회보험료	- 표준계약서 체결 사회보험료지원 사업 신청자

2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의 구성과 역할

1. 심의위원회 운영의 목적과 역할

- ☐ 「예술인복지법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, <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> 등에 의거, 예술인복지제도·사업의 대상인 예술인임을 ‘최종’ 확인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심의기구
- ☐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예술활동증명 심의 세부기준 논의·적용 및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 수행

2. 심의위원회의 구성

- ☐ 분과위원회
 - 문화예술분야 15개 분과로 구성(최소 3인 이상)
 - 각 문화예술분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
 - 각 분과별 예술활동증명 신청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진행
 - * 각 신청건에 대해 3명의 심의위원이 심의
 - 각 문화예술분과 심의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
- ☐ 전체위원회
 - 분과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(15인)
 - 전체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호선으로 선정
 - * 전체위원회 위원장 부재 시 나머지 분과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 대행
 - 심의위원회 임기동안 전체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 수행
 -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논의
 - *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전체위원회에서 논의
 - 연 1회 정기회의 개최(필요시 임시회의 소집)

3.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 심의 방법

- ☐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술활동증명 신청건을 검토
- ☐ 신청인이 선택한 문화예술분야·신청방법별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야별 심의 기준에 따라 심의결과(완료/미완료) 의견을 제시(연중 상시)
 - * 각 신청건에 대해 3명의 심의위원이 동시 심의, 과반 의견에 따라 '완료/미완료' 결정
 - * 심의위원회 심의 전과정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
- ☐ 심의위원은 월마다 배정되며, 배정 위원은 월별로 상이

4.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본 원칙·방향

- ☐ 「예술인복지법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, <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> 등에 제시된 원칙·기준을 준수하여 심의
- ☐ 신청인의 예술활동을 통해 완결된 결과물(작품) 또는 예술활동수입에 등을 신청인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
 - *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은 별첨자료 참조

5. 심의비

- ☐ 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소정의 심의비 지급
- ☐ 심의비 지급 절차
 - ① 차수별 심의위원 심의 및 재심의 완료
 - * 각 신청건에 대해 심의위원 3명 모두 심의가 종료된 시점
 - ② 신청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심의 결과 안내 완료
 - ③ 각 심의위원별 심의 건수 집계
 - ④ 심의사례비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
 - ⑤ 각 심의위원별 심의비 지급